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3.9.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8월 26일 유동균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9월 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제안설명 생략

가. 제안이유

동 제정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2조 ~ 안 제4조에서는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(2)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.
- (3)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,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.

- (4) 안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함.
- (5) 안 제8조에서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.

3. 검토보고

동 제정 조례안은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,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고 구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상위법인 「국어기본법」,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,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와 예산관련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절차상은 물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